

2026 신한대학교 제2대 감사운영위원회 제8차 회의

일시: 2026. 7. 21. 18:00

장소: 행함관 3층 감사운영위원회 사무실

0. 성원점검

감사운영위원장		원채빈	
감사운영부위원장	이채은	간호대학	조영윤
공과대학	어태경	디자인예술대학	강혜성
보건대학	배서현	태권도·체육대학	문시연

총원 7명, 재적 5명, 불참 2명

*불출석 빨강, 대리참석 노랑, 타회의 참석하여 불출석 하늘색으로 표기

I. 보고 안건

1) 위원장단 보고

■ 회의록 업로드

- 제7차~제8차 감사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업로드 완료.

2) 단위별 보고

■ 간호대학

- 최종 결과보고서 6부 작성 및 교차 검증 완료함.

■ 경영대학

- 최종 결과보고서 7부 작성 완료함.
- 교차 검증 진행 중.

■ 공과대학

- 최종 결과보고서 6부 작성 및 교차 검증 완료함.

■ 사회과학대학

- 최종 결과보고서 7부 작성 완료함.
- 교차 검증 진행 중.

■ 보건대학

- 최종 결과보고서 6부 작성 완료함.
- 교차 검증 진행 중.

II. 논의 안건

■ 재정운용세칙 제5조 제6항 관련

- 재정운용세칙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예·결산안은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.
- 그러나 일부 단위에서 심의 이전 예산안을 공개한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.
- ▶ 감사운영부위원장: 말은 단위의 경우 업로드 일자가 중요한 기준이나, 잘못된 파일을 업로드한 사례가 확인됨. 이에 심의 이후 7일 이내 공개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.
- ▶ 간호대학: 재정운용세칙에는 심의 후 7일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, 심의 이전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음. 이에 징계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.
- ▶ 공과대학: 말은 단위의 경우 제출된 소명서만으로는 충분한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징계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함.

■ 재정운용세칙 제5조 제6항 의결

- 재정운용세칙상 예·결산안 심의 후 7일 이내 공개가 원칙이나, 심의 이전 공개를 진행한 경우 공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주의 1회 부여로 통일하고자 함.
- 찬성 4명, 반대 0명, 기권 0명 →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.

■ 미래자동차공학과 소명서

- 학생회비로 쿠팡 와우 멤버십이 총 두 차례 자동 결제되었으며, 이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사비로 금액을 보전함. 이에 대한 징계 부여 여부를 논의함.
- ▶ 감사운영부위원장: 소명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자동 결제가 한 차례였다면 참작

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나, 두 차례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부주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. 이에 예산안에 없는 집행으로 보아 결제 1건당 주의 1회 부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함.

- ▶ 간호대학: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며, 예산안에 없는 집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.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소명서상 인지 즉시 사비로 보전한 점을 고려하여 결제 1건당 주의 1회 부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함.
- ▶ 보건대학: 소명서를 통해 일부 참작할 사유는 확인되나, 예산안에 없는 집행인만큼 결제 1건당 주의 1회 부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함.

■ 미래자동차공학과 소명서 의결

-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두 차례 자동 결제가 이루어졌으며, 이후 사비로 보전하였으나 동일한 사례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부주의한 집행으로 판단됨.
- 다만 결제 금액이 10,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과 인지 후 즉시 사비로 보전한 점을 고려하여 결제 1건당 주의 1회를 부여하여 총 주의 2회를 부여하기로 함.
- 찬성 4명, 반대 0명, 기권 0명 →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.

■ K-POP학과 예산 전용 절차 관련

- 예산 전용 사유서를 통해 예산 전용 2건이 확인되었으며, 모두 전용 가능 범위인 편차 10,000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.
- ▶ 공과대학: 예산 전용 사유서가 금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절차인 만큼 예산 전용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. 이에 절차상 미비를 고려하여 두 건을 통합해 주의 1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 제시함.
- ▶ 간호대학: 금액 편차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용한 것으로 판단됨. 이에 절차상 미비를 고려하여 두 건을 통합해 주의 1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▶ 감사운영부위원장: 간호대학과 동일한 의견으로, 금액 편차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됨. 이에 절차상 미비를 고려하여 두 건을 통합해 주의 1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.

■ K-POP학과 예산 전용 절차 관련 의결

- 예산 전용은 편차 10,000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나, 사유서에 기재된 두 건 모두 편차 10,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.

- 다만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이 아닌 적게 집행한 점과 금년도 1학기부터 예산 전용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두 건을 통합해 주의 1회를 부여하기로 함.
- 찬성 4명, 반대 0명, 기권 0명 →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.

■ 공연예술학과 미심의 관련

- 공연예술학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총 7부에 대해 모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어, 소명서 검토한 후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함.
- ▶ 감사운영부위원장: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 참작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, 심의를 거치지 않은 집행인만큼 추가경정예산안 1부당 경고 1회 부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함.
- ▶ 간호대학: 감사운영부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, 추가경정예산안 1부당 경고 1회 부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함.
- ▶ 공과대학: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, 추가경정예산안 1부당 경고 1회 부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함.

■ 공연예술학과 미심의 관련 의결

- 공연예술학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총 7부에 대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.
- 이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안 1부당 경고 1회를 부여하여 총 경고 7회를 부여하기로 함.
- 찬성 4명, 반대 0명, 기권 0명 →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.

III. 폐회 (19:38)